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한홍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287

발의연월일: 2020. 7. 22.

발 의 자:윤한홍·한무경·권성동

배현진 • 이철규 • 태영호

서일준 · 조경태 · 장제원

홍준표・조수진・추경호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953년 제정되어 시행된 현행 형법은 제정 이후 60년 이상 경과하였음에도 제정 당시의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표현, 어법에 맞지 않는 문장등이 그대로 사용되고 있고, 일상적인 언어 사용 규범에도 맞지 않아일반 국민들이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형법은 형사실체법의 근간이 되는 법으로서 많은 형사 관련 특별법의 기초가 될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직접 적용되는 기본법이라는 점에서 형법에 사용되는 용어나 문장은 형사 관련 특별법 등 다른법령 문장의 모범이 되어야 하고, 국민들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도모할수 있어야 함.

따라서, 형법에 사용된 일본식 표현이나 어려운 한자어 등 개정이 시급한 대표적인 법률용어들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어 알기 쉬운 우리말로 변경하고, 법률문장의 내용을 정확히 전달할 수 있도록 어순구조를 재 배열하는 등 알기 쉬운 법률 문장으로 개정함으로써 형법에 대한 국민 의 접근성 및 신뢰성을 높이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1조, 제11조 등)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1조(범죄의 성립과 처벌) ①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른다.
 - ② 범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게 되거 나 형이 구법(舊法)보다 가벼워진 경우에는 신법(新法)에 따른다.
 - ③ 재판이 확정된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한다.
- 제11조·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제21조 및 제23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제11조(농아자) 듣거나 말하는 데 모두 장애가 있는 사람의 행위에 대해서는 형을 감경한다.
- 제13조(고의)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 다만,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제14조(과실) 정상적으로 기울여야 할 주의(注意)를 게을리 하여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 는 경우에만 처벌한다.

- 제15조(사실의 착오) ① 특별히 무거운 죄가 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무거운 죄로 벌하지 않는다.
 - ② 결과 때문에 형이 무거워지는 죄의 경우에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을 때에는 무거운 죄로 벌하지 않는다.
- 제21조(정당방위) ①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 익(法益)을 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는 벌하지 않는다.
 - ②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정황(情況)에 따라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경우에 야간이나 그 밖의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를 느끼거나 경악(驚愕)하거나 흥분하거나 당황하였기 때문에 그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벌하지 않는다.
- 제23조(자구행위) ①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서는 청구권을 보전 (保全)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이 불가능해지거나 현저히 곤란해지는 상황을 피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않는다.
 - ② 제1항의 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정황에 따라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 제26조 및 제29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제26조(중지범) 범인이 실행에 착수한 행위를 자의(自意)로 중지하거 나 그 행위로 인한 결과의 발생을 자의로 방지한 경우에는 형을 감

경하거나 면제한다.

제29조(미수범의 처벌) 미수범을 처벌할 죄는 각칙의 해당 죄에서 정하다.

제3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3조(공범과 신분) 신분이 있어야 성립되는 범죄에 신분 없는 사람이 가담한 경우에는 그 신분 없는 사람에게도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신분 때문에 형의 경중이 달라지는 경우에 신분이 없는 사람은 무거운 형으로 벌하지 않는다.

제3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35조(누범) ① 금고(禁錮)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은 누범(累犯)으로 처벌한다.
 - ② 누범의 형은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한다.
- 제38조 및 제40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제38조(경합범과 처벌례) ① 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 1.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인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 2.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외의 같은 종류의 형인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한 형기 또는 액수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과료와 과료, 몰수와 몰수는 병과(倂科)할 수 있다.

- 3.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이 무기징역, 무기금고 외의 다른 종류의 형인 경우에는 병과한다.
- ② 제1항 각 호의 경우에 징역과 금고는 같은 종류의 형으로 보아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 제40조(상상적 경합) 한 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제48조 및 제50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제48조(몰수의 대상과 추징) ① 범인 외의 사람의 소유에 속하지 않거나 범죄 후 범인 외의 사람이 사정을 알면서 취득한 다음 각 호의물건은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
 - 1.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 2.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겼거나 취득한 물건
 - 3. 제1호 및 제2호의 대가로 취득한 물건
 - ② 제1항 각 호의 물건을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價額)을 추징한다.
 - ③ 문서, 도화(圖畵), 전자기록(電磁記錄) 등 특수매체기록 또는 유가증권의 일부가 몰수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그 부분을 폐기한다.
- 제50조(형의 경중) ① 형의 경중은 제41조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다

- 만, 무기금고와 유기징역은 무기금고를 무거운 것으로 하고 유기금고의 장기가 유기징역의 장기를 초과하는 때에는 유기금고를 무거운 것으로 한다.
- ② 같은 종류의 형은 장기가 긴 것과 다액이 많은 것을 무거운 것으로 하고 장기 또는 다액이 같은 경우에는 단기가 긴 것과 소액이 많은 것을 무거운 것으로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제외하고는 죄질과 범정(犯情)을 고려하여 경 중을 정한다.
- 제52조 · 제53조 및 제56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제52조(자수, 자복) ① 죄를 지은 후 수사기관에 자수한 경우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 ②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범죄의 경우에는 피해 자에게 죄를 자복(自服)하였을 때에도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 제53조(정상참작감경) 범죄의 정상(情狀)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 제56조(가중·감경의 순서) 형을 가중·감경할 사유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 1. 각칙 조문에 따른 가중
 - 2. 제34조제2항에 따른 가중
 - 3. 누범 가중

- 4. 법률상 감경
- 5. 경합범 가중
- 6. 정상참작감경

제5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9조(선고유예의 요건) 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고려하여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할 때에는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② 형을 병과할 경우에도 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66조(사형) 사형은 교정시설 안에서 교수(絞首)하여 집행한다.

제67조(징역) 징역은 교정시설에 수용하여 집행하며, 정해진 노역(勞 役)에 복무하게 한다.

제68조(금고와 구류) 금고와 구류는 교정시설에 수용하여 집행한다.

제70조의 제목 "(勞役場留置)"를 "(노역장 유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1,000일"을 "1천일"로, "유치기간을"을 "노역장 유치기간을"로 한다.

① 벌금이나 과료를 선고할 때에는 이를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노역장 유치기간을 정하여 동시에 선고해야 한다.

제7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1조(유치일수의 공제) 벌금이나 과료의 선고를 받은 사람이 그 금액의 일부를 납입한 경우에는 벌금 또는 과료액과 노역장 유치기간의 일수(日數)에 비례하여 납입금액에 해당하는 일수를 뺀다.

제72조부터 제74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제72조(가석방의 요건) ① 징역이나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이 행상(行狀)이 양호하여 뉘우침이 뚜렷한 때에는 무기형은 20년, 유기형은 형기의 3분의 1이 지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경우에 벌금이나 과료가 병과되어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완납하여야 한다.
- 제73조(판결선고 전 구금과 가석방) ① 형기에 산입된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는 가석방을 하는 경우 집행한 기간에 산입한다.
 - ② 제72조제2항의 경우에 벌금이나 과료에 관한 노역장 유치기간에 산입된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이 납입된 것으 로 본다.
- 제74조(가석방의 실효) 가석방 기간 중 고의로 지은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가석방 처분은 효력을 잃 는다.

제7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7조(형의 시효의 효과) 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시효가 완성되면 그 집행이 면제된다.

제78조의 제목 "(時效의 期間)"을 "(형의 시효의 기간)"으로 하고, 같

은 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자격정지는"을 "자격정지:"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추징은"을 "추징:"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시효는 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후 그 집행을 받지 않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면 완성된다.

- 1. 사형: 30년
- 2. 무기의 징역 또는 금고: 20년
- 3.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 15년
- 4.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10년
- 7. 구류 또는 과료: 1년

제8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3조(기간의 계산) 연(年) 또는 월(月)로 정한 기간은 연 또는 월 단 위로 계산한다.

제87조 및 제88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 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 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로 처벌한다.
 -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로 처벌한다. 살

- 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실행한 사람도 같다.
- 3. 부화수행(附和隨行)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로 처벌한다.
- 제88조(내란목적의 살인)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한 사람은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로 처벌한다.
- 제1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119조(폭발물 사용) ① 폭발물을 사용하여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해하거나 그 밖에 공공의 안전을 문란하게 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한다.
 - ② 전쟁, 천재지변, 그 밖의 사변에 있어서 제1항의 죄를 지은 사람은 사형이나 무기징역으로 처벌한다.
 - ③ 제1항과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제125조 · 제126조 · 제133조 및 제134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제125조(폭행, 가혹행위) 재판, 검찰, 경찰 그 밖에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 또는 이를 보조하는 사람이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형사피의자나 그 밖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 또는 가혹행위를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로 처벌한다.
- 제126조(피의사실공표) 검찰, 경찰 그 밖에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사람이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피의사실을 공소제기 전에 공표(公表)한 경우에

- 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로 처벌한다.
- 제133조(뇌물공여 등) ①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기재한 뇌물을 약속, 공여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
 - ② 제1항의 행위에 제공할 목적으로 제3자에게 금품을 교부한 사람 또는 그 사정을 알면서 금품을 교부받은 제3자도 제1항의 형으로 처벌한다.
- 제134조(몰수, 추징) 범인 또는 사정을 아는 제3자가 받은 뇌물 또는 뇌물로 제공하려고 한 금품은 몰수한다. 이를 몰수할 수 없을 경우 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 제14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145조(도주, 집합명령위반) ① 법률에 의하여 체포되거나 구금된 사람이 도주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한다.
 - ② 제1항의 구금된 사람이 천재지변이나 사변 그 밖에 법령에 의하여 잠시 석방된 상황에서 정당한 이유없이 집합명령에 위반한 경우에도 제1항의 형으로 처벌한다.
- 제159조 · 제161조 및 제163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제159조(시체 등의 오욕) 시체, 유골 또는 유발(遺髮)을 오욕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
- 제161조(시체 등의 유기 등) ① 시체, 유골, 유발 또는 관 속에 넣어 둔 물건을 손괴, 유기, 은닉 또는 영득(領得)한 사람은 7년 이하의

- 징역으로 처벌한다.
- ② 분묘를 발굴하여 제1항의 죄를 지은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한다.
- 제163조(변사체 검시 방해) 변사자의 시체 또는 변사로 의심되는 시체 를 은닉하거나 변경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검시(檢視)를 방해한 사람은 7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
- 제164조부터 제167조까지 및 제170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제164조(현주건조물 등 방화) ①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지 하채굴시설을 불태운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 한다.
 - ② 제1항의 죄를 지어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한다.
- 제165조(공용건조물 등 방화) 불을 놓아 공용(公用)으로 사용하거나 공익을 위해 사용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지하채굴시설을 불태운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한다.
- 제166조(일반건조물 등 방화) ① 불을 놓아 제164조와 제165조에 기재한 외의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지하채굴시설을 불태운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한다.

- ② 자기 소유인 제1항의 물건을 불태워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
- 제167조(일반물건 방화) ① 불을 놓아 제164조, 제165조, 제166조에 기재한 외의 물건을 불태워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사람은 1년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한다.
 - ② 제1항의 물건이 자기 소유인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백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
- 제170조(실화) ① 과실로 제164조 또는 제165조에 기재한 물건 또는 타인 소유인 제166조에 기재한 물건을 불태운 사람은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
 - ② 과실로 자기 소유인 제166조의 물건 또는 제167조에 기재한 물건을 불태워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사람도 제1항의 형으로 처벌한다.
- 제18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184조(수리방해) 둑을 무너뜨리거나 수문을 파괴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수리(水利)를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
- 제192조부터 제195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제192조(먹는 물의 사용방해) ① 일상생활에서 먹는 물로 사용되는 물에 오물을 넣어 먹는 물로 쓰지 못하게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

- ② 제1항의 먹는 물에 독물이나 그 밖에 건강을 해하는 물건을 넣은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한다.
- 제193조(수돗물의 사용방해) ① 수도(水道)를 통해 공중이 먹는 물로 사용하는 물 또는 그 수원(水原)에 오물을 넣어 먹지 못하게 한 사 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한다.
 - ② 제1항의 먹는 물 또는 수원에 독물 그 밖에 건강을 해하는 물건을 넣은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한다.
- 제194조(먹는 물 혼독치사상) 제192조제2항 또는 제193조제2항의 죄를 지어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한다.
- 제195조(수도불통) 공중이 먹는 물을 공급하는 수도 그 밖의 시설을 손괴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불통(不通)하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 0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한다.
- 제2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210조(위조통화 취득 후의 지정행사) 제207조에 기재한 통화를 취득한 후 그 사정을 알고 행사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
- 제25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252조(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 등) ① 사람의 촉탁이나 승낙을 받아 그를 살해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한다.

② 사람을 교사하거나 방조하여 자살하게 한 사람도 제1항의 형으로 처벌한다.

제26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62조(폭행치사상) 제260조와 제261조의 죄를 지어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제257조부터 제259조의 예에 따른다. 제26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 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

제27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271조(유기, 존속유기) ① 나이가 많거나 어림, 질병 그 밖의 사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법률상 또는 계약상 보호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유기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
 -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지은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
 - ③ 제1항의 죄를 지어 사람의 생명에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한다.
 - ④ 제2항의 죄를 지어 사람의 생명에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한다.

제32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325조(점유강취, 준점유강취)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점유에 속하는 자기의 물건을 강취(强取)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0년 이하의 자격정지로 처벌한다.
 - ② 타인의 점유에 속하는 자기의 물건을 취거(取去)하는 과정에서 그 물건의 탈환에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하거나 범죄의 흔적을 인 멸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때에도 제1항의 형으로 처벌한다.
 - ③ 제1항과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제330조 · 제331조 및 제335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한다.
- 제331조(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 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사람은 1 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한다.
 - ②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사람도 제1항의 형으로 처벌한다.
- 제335조(준강도) 절도가 재물의 탈환에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하거나 범죄의 흔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때에는 제333조, 제334조의 예에 따른다.
- 제348조 및 제349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제348조(준사기) ① 미성년자의 사리분별력 부족 또는 사람의 심신장

- 애를 이용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람은 10 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
- ② 제1항의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게 하거나 재산 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도 제1항의 형으로 처벌한다.
- 제349조(부당이득) ① 사람의 곤궁하고 절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현저하게 부당한 이익을 취득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
 - ② 제1항의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게 한경우에도 제1항의 형으로 처벌한다.
- 제357조제1항 중 "자가"를 "사람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정(情)을"을 "그 사정을"로 한다.
 - ② 제1항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공여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혀 행

개 정 안

- 第1條(犯罪의 成立과 處罰) ① 犯罪의 成立과 處罰은 行爲時의法律에 依한다.
 - ② 犯罪後 法律의 變更에 依하여 그 行為가 犯罪를 構成하지 아니하거나 刑이 舊法보다 輕한 때에는 新法에 依한다.
 - ③ 裁判確定後 法律의 變更에 依하여 그 行爲가 犯罪를 構成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刑의 執 行을 免除한다.
- 第11條(聾啞者) 聾啞者의 行為는 刑을 減輕한다.
- 第13條(犯意) 罪의 成立要素인 事 實을 認識하지 못한 行為는 罰 하지 아니한다. 但, 法律에 特 別한 規定이 있는 境遇에는 例 外로 한다.
- 第14條(過失) 正常의 注意를 怠慢 함으로 因하여 罪의 成立要素 인 事實을 認識하지 못한 行為

- 제1조(범죄의 성립과 처벌) ① 범 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른다.
 - ② 범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 게 되거나 형이 구법(舊法)보다 가벼워진 경우에는 신법(新法) 에 따른다.
 - ③ 재판이 확정된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 성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한다.
- 제11조(농아자) 듣거나 말하는 데 모두 장애가 있는 사람의 행위 에 대해서는 형을 감경한다.
- 제13조(고의) 죄의 성립요소인 사 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 하지 않는다. 다만, 법률에 특 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 외로 한다.
- 제14조(과실) 정상적으로 기울여 야 할 주의(注意)를 게을리 하 여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

境遇에 限하여 處罰한다.

- 第15條(事實의 錯誤) ① 特別 | 제15조(사실의 착오) ① 특별 | 重한 罪가 되는 事實을 認識하 지 못한 行爲는 重한 罪로 罰 하지 아니한다
 - ② 結果로 因하여 刑이 重할 罪에 있어서 그 結果의 發生을 豫見할 수 없었을 때에는 重한 罪로 罰하지 아니한다.
- 第21條(正當防衛) ① 自己 또는 | 제21조(정당방위) ① 현재의 부당 他人의 法益에 對한 現在의 不 當한 侵害를 防衛하기 爲한 行 爲는 相當한 理由가 있는 때에 는 罰하지 아니한다.
 - ② 防衛行為가 그 程度를 超過 한 때에는 情況에 依하여 그 刑을 減輕 또는 免除할 수 있 다.
 - ③ 前項의 境遇에 그 行爲가 夜間 其他 不安스러운 狀態下 에서 恐怖, 驚愕, 興奮 또는 唐 慌으로 因한 때에는 罰하지 아 니한다.

는 法律에 特別한 規定이 있는 | 식하지 못한 행위는 법률에 특 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처 벌하다.

> 무거운 죄가 되는 사실을 인식 하지 못한 행위는 무거운 죄로 벌하지 않는다.

② 결과 때문에 형이 무거워지 는 죄의 경우에 그 결과의 발 생을 예견할 수 없었을 때에는 무거운 죄로 벌하지 않는다.

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 의 법익(法益)을 방위하기 위하 여 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 ②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

- 한 경우에는 정황(情況)에 따라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경우에 야간이나 그 밖의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 를 느끼거나 경악(驚愕)하거나 흥분하거나 당황하였기 때문에 그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벌하 지 않는다.

第23條(自救行爲) ① 法定節次에 依하여 請求權을 保全하기 不 能한 境遇에 그 請求權의 實行 不能 또는 顯著한 實行困難을 避하기 爲한 行爲는 相當한 理 由가 있는 때에는 罰하지 아니 한다.

② 前項의 行為가 ユ 程度를 超過한 때에는 情況에 依하여 刑을 減輕 또는 免除할 수 있 다.

第26條(中止犯) 犯人이 自意로 實 | 제26조(중지범) 범인이 실행에 착 行에 着手한 行爲를 中止하거 나 그 行爲로 因한 結果의 發 生을 防止한 때에는 刑을 減輕 또는 免除한다.

第29條(未遂犯의 處罰) 未遂犯을 處罰할 罪는 各本條에 定한다.

第33條(共犯과 身分) 身分關係豆 因하여 成立될 犯罪에 加功한 行為는 身分關係가 없는 者에 게도 前3條의 規定을 適用한다. 但, 身分關係로 因하여 刑의 輕 重이 있는 境遇에는 重한 刑으 제23조(자구행위) ① 법률에서 정 한 절차에 따라서는 청구권을 보전(保全)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이 불가능해 지거나 현저히 곤란해지는 상 황을 피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 하지 않는다.

② 제1항의 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정황에 따라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 다.

수한 행위를 자의(自意)로 중지 하거나 그 행위로 인한 결과의 발생을 자의로 방지한 경우에 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한다.

제29조(미수범의 처벌) 미수범을 처벌할 죄는 각칙의 해당 죄에 서 정한다.

제33조(공범과 신분) 신분이 있어 야 성립되는 범죄에 신분 없는 사람이 가담한 경우에는 그 신 분 없는 사람에게도 제30조부 터 제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 한다. 다만, 신분 때문에 형의

로 罰하지 아니한다.

- 第35條(累犯) ① 禁錮 以上의 刑 제35조(누범) ① 금고(禁錮) 이상 을 받어 그 執行을 終了하거나 免除를 받은 後 3年內에 禁錮 以上에 該當하는 罪를 犯한 者 는 累犯으로 處罰한다.
 - ② 累犯의 刑은 그 罪에 定한 | 刑의 長期의 2倍까지 加重한다.
- 第38條(競合犯과 處罰例) ① 競合 | 제38조(경합범과 처벌례) ① 경합 犯을 同時에 判決할 때에는 다 음의 區別에 依하여 處罰한다.
 - 1. 가장 重한 罪에 定한 刑이ㅣ 한다. 死刑 또는 無期懲役이나 無 期禁錮인 때에는 가장 重한 罪에 定한 刑으로 處罰한다.
 - 2. 各 罪에 定한 刑이 死刑 또 는 無期懲役이나 無期禁錮以 外의 同種의 刑인 때에는 가 장 重한 罪에 定한 長期 또 는 多額에 그 2分의 1까지 加重하되 各 罪에 定한 刑의 長期 또는 多額을 合算한 刑 |

- 경중이 달라지는 경우에 신분 이 없는 사람은 무거운 형으로 벌하지 않는다.
- 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 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은 누범(累犯)으로 처 벌한다.
 - ② 누범의 형은 그 죄에 대하 여 정한 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한다.
- 범을 동시에 판결할 때에는 다 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
- 1.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 한 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 금고인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 벌한다.
 - 2.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외 의 같은 종류의 형인 경우에 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 없다. 但 科料와 科料, 沒收 와 沒收는 倂科할 수 있다.
- 3. 各 罪에 定한 刑이 無期懲役 | 이나 無期禁錮以外의 異種의 刑인 때에는 倂科한다.
- ② 前項 各號의 境遇에 있어서 懲役과 禁錮는 同種의 刑으로 看做하여 懲役刑으로 處罰한다.

- 第40條(想像的 競合) 1個의 行為 가 數個의 罪에 該當하는 境遇 에는 가장 重한 罪에 定한 刑 으로 處罰하다.
- 第48條(沒收의 對象과 追徵) ① 犯人以外의 者의 所有에 屬하 지 아니하거나 犯罪後 犯人以 外의 者가 情을 알면서 取得한 다음 記載의 物件은 全部 또는 一部를 沒收할 수 있다.
 - 1. 犯罪行爲에 提供하였거나 提 供하려고 한 物件.
 - 2. 犯罪行爲로 因하여 生하였거 📗

- 期 또는 額數를 超過할 수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한 형기 또 는 액수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과료와 과료, 몰수와 몰 수는 병과(倂科)할 수 있다.
 - 3.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이 무기징역, 무기금고 외의 다 른 종류의 형인 경우에는 병 과한다.
 - ② 제1항 각 호의 경우에 징역 과 금고는 같은 종류의 형으로 보아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 |제40조(상상적 경합) 한 개의 행 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 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 |제48조(몰수의 대상과 추징) ① 범인 외의 사람의 소유에 속하 지 않거나 범죄 후 범인 외의 사람이 사정을 알면서 취득한 다음 각 호의 물건은 전부 또 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
 - 1.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 공하려고 한 물건
 - 2.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겼거나

- 나 이로 因하여 取得한 物件. 취득한 물건 3. 前2號의 對價로 取得한 物 件.
- ② 前項에 記載한 物件을 沒收 하기 不能한 때에는 그 價額을 追徵한다.
- ③ 文書, 圖畵, 電磁記錄등 特 殊媒體記錄 또는 有價證券의 一部가 沒收에 該當하는 때에 는 그 部分을 廢棄한다.
- 第50條(刑의 輕重) ① 刑의 輕重 | 제50조(형의 경중) ① 형의 경중 은 第41條 記載의 順序에 依한 다. 但, 無期禁錮와 有期懲役은 禁錮를 重한 것으로 하고 有期 禁錮의 長期가 有期懲役의 長 期를 超過하는 때에는 禁錮를 重한 것으로 한다.
 - ② 同種의 刑은 長期의 긴 것 과 多額의 많은 것을 重한 것 으로 하고 長期 또는 多額이 同一한 때에는 그 短期의 긴 것과 少額의 많은 것을 重한 것으로 한다.
 - ③ 前2項의 規定에 依む 外에 | 는 罪質과 犯情에 依하여 輕重

- 3. 제1호 및 제2호의 대가로 취 득한 물건
- ② 제1항 각 호의 물건을 몰수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價 額)을 추징한다.
 - ③ 문서, 도화(圖畵), 전자기록 (電磁記錄) 등 특수매체기록 또 는 유가증권의 일부가 몰수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그 부분을 폐기한다.
 - 은 제41조 각 호의 순서에 따 른다. 다만, 무기금고와 유기징 역은 무기금고를 무거운 것으 로 하고 유기금고의 장기가 유 기징역의 장기를 초과하는 때 에는 유기금고를 무거운 것으 로 한다.
- ② 같은 종류의 형은 장기가 긴 것과 다액이 많은 것을 무 거운 것으로 하고 장기 또는 다액이 같은 경우에는 단기가 긴 것과 소액이 많은 것을 무 거운 것으로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제외하고

을 定한다.

第52條(自首, 自服) ① 罪를 犯む 後 捜査責任이 있는 官署에 自 首한 때에는 그 刑을 減輕 또 는 免除할 수 있다.

② 被害者의 意思에 反하여 處 罰할 수 없는 罪에 있어서 被 害者에게 自服한 때에도 前項 과 같다.

第53條(酌量減輕) 犯罪의 情狀에 參酌할 만한 事由가 있는 때에 는 酌量하여 그 刑을 減輕할 수 있다.

第56條(加重減輕의 順序) 刑을 加 重減輕할 事由가 競合된 때에 는 다음 順序에 依한다.

- 1. 各則本條에 依한 加重
- 2. 第34條第2項의 加重
- 3. 累犯加重
- 4. 法律上減輕
- 5. 競合犯加重
- 6. 酌量減輕

第59條(宣告猶豫의 要件) ① 1年 | 제59조(선고유예의 요건) ① 1년

는 죄질과 범정(犯情)을 고려하 여 경중을 정한다.

제52조(자수, 자복) ① 죄를 지은 후 수사기관에 자수한 경우에 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②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 벌할 수 없는 범죄의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죄를 자복(自服)하 였을 때에도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제53조(정상참작감경) 범죄의 정 상(情狀)에 <u>참작할 만한 사유가</u> 있는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제56조(가중·감경의 순서) 형을 가중·감경할 사유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 1. 각칙 조문에 따른 가중
- 2. 제34조제2항에 따른 가중
- 3. 누범 가중
- 4. 법률상 감경
- 5. 경합범 가중
- 6. 정상참작감경

以下의 懲役이나 禁錮. 資格停 止 또는 罰金의 刑을 宣告할 境遇에 第51條의 事項을 參酌 하여 改悛의 情狀이 顯著한 때 에는 그 宣告를 猶豫할 수 있 다. 但. 資格停止 以上의 刑을 받은 前科가 있는 者에 對하여 는 例外로 한다.

② 刑을 倂科할 境遇에도 刑의 全部 또는 一部에 對하여 그 宣告를 猶豫할 수 있다.

서 絞首하여 執行한다.

拘置하여 定役에 服務하게 한 다.

第68條(禁錮斗 拘留) 禁錮斗 拘留 는 刑務所에 拘置한다.

第70條(勞役場留置) ① 罰金 또는 | 제70조(노역장 유치) ① 벌금이나 科料를 宣告할 때에는 納入하 지 아니하는 境遇의 留置期間 을 定하여 同時에 宣告하여야 한다.

② 선고하는 벌금이 1억원 이 상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300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 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고려 하여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할 때에는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자격정지 이상 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사 람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② 형을 병과할 경우에도 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선고 를 유예할 수 있다.

第66條(死刑) 死刑은 刑務所內에 제66조(사형) 사형은 교정시설 안 에서 교수(絞首)하여 집행한다. 第67條(懲役) 懲役은 刑務所內에 제67조(징역) 징역은 교정시설에 수용하여 집행하며, 정해진 노 역(勞役)에 복무하게 한다.

> | 제68조(금고와 구류) 금고와 구류 는 교정시설에 수용하여 집행 한다.

> 과료를 선고할 때에는 이를 납 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노역 장 유치기간을 정하여 동시에 선고해야 한다.

2	 	 	 	 	 	_	 _	 	-
	 	 	 	 	 	_	 _	 	

일 이상, 5억원 이상 50억원 미 만인 경우에는 500일 이상, 50 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1,000일 이상의 유치기간을 정하여야 하다.

第71條(留置日數의 控除) 罰金 또 | 제71조(유치일수의 공제) 벌금이 는 科料의 宣告를 받은 者가 그 一部를 納入한 때에는 罰金 또는 科料額과 留置期間의 日 數에 比例하여 納入金額에 相 當한 日數를 除한다.

第72條(假釋放의 要件) ① 懲役 | 제72조(가석방의 요건) ① 징역이 또는 禁錮의 執行中에 있는 者 가 그 行狀이 良好하여 改悛의 情이 顯著한 때에는 無期에 있 刑期의 3分의 1을 經過한 後 行政處分으로 假釋放을 할 수 있다.

科料의 倂科가 있는 때에는 그 | 그 금액을 완납하여야 한다. 金額을 完納하여야 한다.

① 刑期에 算入된 判決宣告前

-----1천일-------노역장 유치기간을-----

나 과료의 선고를 받은 사람이 그 금액의 일부를 납입한 경우 에는 벌금 또는 과료액과 노역 장 유치기간의 일수(日數)에 비 례하여 납입금액에 해당하는 일수를 뺀다.

나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사 람이 행상(行狀)이 양호하여 뉘 우침이 뚜렷한 때에는 무기형 어서는 20년, 有期에 있어서는 | 은 20년, 유기형은 형기의 3분 의 1이 지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벌금이나 ② 前項의 境遇에 罰金 또는 지료가 병과되어 있는 때에는

第73條(判決宣告前拘禁과 假釋放) | 제73조(판결선고 전 구금과 가석 방) ① 형기에 산입된 판결선 拘禁의 日數는 假釋放에 있어 | 고 전 구금일수는 가석방을 하

- 서 執行을 經過한 期間에 算入 는 경우 집행한 기간에 산입한 한다.
- ② 罰金 또는 科料에 關한 留 置期間에 算入된 判決宣告前 拘禁日數는 前條 第2項의 境遇 에 있어서 그에 該當하는 金額 이 納入된 것으로 看做한다.
- 第74條(假釋放의 失效) 假釋放中 | 제74조(가석방의 실효) 가석방 기 禁錮 以上의 刑의 宣告를 받어 그 判決이 確定된 때에는 假釋 放處分은 效力을 잃는다. 但 過 失로 因한 罪로 刑의 宣告를 받었을 때에는 例外로 한다.
- 第77條(時效의 效果) 刑의 宣告를 받은 者는 時效의 完成으로 因 하여 그 執行이 免除된다.
- 第78條(時效의 期間) 時效는 刑을 宣告하는 裁判이 確定된 後 ユ 執行을 받음이 없이 다음의 期 間을 經過함으로 因하여 完成 된다.
 - 1. 死刑은 30年
 - 2. 無期의 懲役 또는 禁錮는 20 年
 - 3. 10年 以上의 懲役 또는 禁錮

- 다.
- ② 제72조제2항의 경우에 벌금 이나 과료에 관한 노역장 유치 기간에 산입된 판결선고 전 구 금일수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 이 납입된 것으로 본다.
- 간 중 고의로 지은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 이 확정된 경우에 가석방 처분 은 효력을 잃는다.
- 제77조(형의 시효의 효과) 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시 효가 완성되면 그 집행이 면제 된다.
- 제78조(형의 시효의 기간) 시효는 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후 그 집행을 받지 않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면 완성된다.
 - 1. 사형: 30년
 - 2. 무기의 징역 또는 금고: 20 년
 - 3.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

는 15年

- 4. 3年 以上의 懲役이나 禁錮 | 또는 10年 以上의 資格停止 는 10年
- 5.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 5. -----또는 5년 이상의 자격정지는 7년
- 6. 5년 미만의 자격정지, 벌금, 6. -----몰수 또는 추징은 5년
- <u>7.</u> 拘留 또는 科料는 1年 <u>7.</u> 구류 또는 과료: 1년
- 로써 定한 期間은 曆數에 따라 計算한다.
- 第87條(內亂) 國土를 僭竊하거나 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 國憲을 紊亂할 目的으로 暴動 한 者는 다음의 區別에 依하여 處斷한다.
 - 無期禁錮에 處한다.
 - 2. 謀議에 參與하거나 指揮하거 | 나 其他 重要한 任務에 從事 한 者는 死刑, 無期 또는 5年 以上의 懲役이나 禁錮에 處 한다. 殺傷, 破壞 또는 掠奪 의 行爲를 實行한 者도 같다.

고: 15년

- 4.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10년
 - ----자격정지:---

-----추징:----

- 第83條(期間의 計算) 年 또는 月 제83조(기간의 계산) 연(年) 또는 월(月)로 정한 기간은 연 또는 월 단위로 계산한다.
 - 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사 1. 首魁는 死刑, 無期懲役 또는 | 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 라 처벌한다.
 - 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로 처벌한다.
 -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 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 사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로 3. 附和隨行하거나 單純히 暴動| 처벌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

懲役 또는 禁錮에 處한다.

第88條(內亂目的의 殺人) 國土를 僭竊하거나 國憲을 紊亂할 目 的으로 사람을 殺害한 者는 死 刑,無期懲役 또는 無期禁錮에 處한다.

使用하여 사람의 生命. 身體 또 는 財産을 害하거나 其他 公安 을 紊亂한 者는 死刑, 無期 또 는 7年 以上의 懲役에 處한다. ② 戰爭, 天災 其他 事變에 있 어서 前項의 罪를 犯한 者는 死刑 또는 無期懲役에 處한다. ③ 前2項의 未遂犯은 處罰한다.

第125條(暴行, 苛酷行為) 裁判, 檢 察, 警察 其他 人身拘束에 關한

에만 關與한 者는 5年以下의 탈 행위를 실행한 사람도 같 다.

> 3. 부화수행(附和隨行)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사람 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로 처벌한다.

제88조(내란목적의 살인) 대한민 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한 사람은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로 처벌한다.

第119條(爆發物使用) ① 爆發物을 | 제119조(폭발물 사용) ① 폭발물 을 사용하여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해하거나 그 밖에 공공의 안전을 문란하게 한 사 람은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 의 징역으로 처벌한다.

> ② 전쟁, 천재지변 그 밖의 사 변에 있어서 제1항의 죄를 지 은 사람은 <u>사형이나 무기징역</u> 으로 처벌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25조(폭행, 가혹행위) 재판, 검 찰, 경찰 그 밖에 인신구속에

職務를 行하는 者 또는 이를 補助하는 者가 그 職務를 行함 에 當하여 刑事被疑者 또는 其 他 사람에 對하여 暴行 또는 苛酷한 行為를 加한 때에는 5 年 以下의 懲役과 10年 以下의 資格停止에 處한다.

第126條(被疑事實公表) 檢察, 警察 其他 犯罪搜查에 關한 職務 를 行하는 者 또는 이를 監督 하거나 補助하는 者가 그 職務 를 行함에 當하여 知得한 被疑事實을 公判請求前에 公表한 때에는 3年 以下의 懲役 또는 5年 以下의 資格停止에 處한다.

第133條(賂物供與등) ① 第129條 乃至 第132條에 記載한 賂物을 約束,供與 또는 供與의 意思를 表示한 者는 5年 以下의 懲役 또는 2千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② 前項의 行爲에 供할 目的으로 第三者에게 金品을 交付하거나 그 情을 알면서 交付를 받은 者도 前項의 刑과 같다.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 또는 이를 보조하는 사람이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형사피의자 나 그 밖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 또는 가혹행위를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로 처벌한다.

제126조(피의사실공표) 검찰, 경찰 그 밖에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사람이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알게된 피의사실을 공소제기 전에 공표(公表)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로 처벌한다.

제133조(뇌물공여 등) ① 제129조 부터 제132조까지에 기재한 뇌 물을 약속, 공여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사람은 5년 이 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의 벌금으로 처벌한다.

② 제1항의 행위에 제공할 목 적으로 제3자에게 금품을 교부 한 사람 또는 그 사정을 알면 서 금품을 교부받은 제3자도

- 第134條(沒收, 追徵) 犯人 또는 제134조(몰수, 추징) 범인 또는 情을 아는 第三者가 받은 賂物 또는 賂物에 供할 金品은 沒收 한다. 그를 沒收하기 不能한 때 에는 그 價額을 追徵한다.
- 第145條(逃走, 集合命令違反) ① | 제145조(도주, 집합명령위반) ① 法律에 依하여 逮捕 또는 拘禁 된 者가 逃走한 때에는 1年 以 下의 懲役에 處한다.
 - ② 前項의 拘禁된 者가 天災, 事變 其他 法令에 依하여 暫時 解禁된 境遇에 正當한 理由없 이 그 集合命令에 違反한 때에 도 前項의 刑과 같다.
- 第159條(死體等의 汚辱) 死體. 遺 骨 또는 遺髮을 汚辱한 者는 2 年 以下의 懲役 또는 500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 第161條(死體等의 領得)① 死體, 遺骨, 遺髮 또는 棺內에 藏置한 物件을 損壞, 遺棄, 隱匿 또는 領得한 者는 7年 以下의 懲役

제1항의 형으로 처벌한다.

사정을 아는 제3자가 받은 뇌 물 또는 뇌물로 제공하려고 한 금품은 몰수한다. 이를 몰수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법률에 의하여 체포되거나 구 금된 사람이 도주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한다. ② 제1항의 구금된 사람이 천 재지변이나 사변 그 밖에 법령 에 의하여 잠시 석방된 상황에 서 정당한 이유없이 집합명령 에 위반한 경우에도 제1항의 형으로 처벌한다.

제159조(시체 등의 오욕) 시체, 유골 또는 유발(遺髮)을 오욕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한다.

제161조(시체 등의 유기 등) ① 시체, 유골, 유발 또는 관 속에 넣어 둔 물건을 손괴, 유기, 은 닉 또는 영득(領得)한 사람은 7 에 處한다.

② 墳墓를 發掘하여 前項의 罪 를 犯한 者는 10年 以下의 懲 役에 處한다.

의 死體 또는 變死의 疑心 있 는 死體를 은닉 또는 변경하거 나 기타 방법으로 檢視를 방해 한 者는 700萬원 이하의 罰金 에 處한다.

第164條(現住建造物등에의 放火) ① 불을 놓아 사람이 住居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現存하는 建造物,汽車,電車,自動車,船 舶, 航空機 또는 鑛坑을 燒毀한 者는 無期 또는 3年 이상의 懲 役에 處한다.

② 第1項의 罪를 犯하여 사람 을 傷害에 이르게 한 때에는 無期 또는 5年 이상의 懲役에 處한다. 死亡에 이르게 한 때에 는 死刑, 無期 또는 7年 이상의 懲役에 處하다.

第165條(公用建造物等에의 放火) 불을 놓아 公用 또는 公益에

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한다.

② 분묘를 발굴하여 제1항의 죄를 지은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한다.

第163條(變死體檢視妨害) 變死者 | 제163조(변사체 검시 방해) 변사 자의 시체 또는 변사로 의심되 는 시체를 은닉하거나 변경하 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검시 (檢視)를 방해한 사람은 7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

> 제164조(현주건조물 등 방화) ①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 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 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지하채굴시설을 불태운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한다.

② 제1항의 죄를 지어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 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경 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 상의 징역으로 처벌한다.

제165조(공용건조물 등 방화) 불 을 놓아 공용(公用)으로 사용하 供하는 建造物, 汽車, 電車, 自| 거나 공익을 위해 사용하는 건

을 燒毀한 者는 無期 또는 3年 以上의 懲役에 處한다.

- ① 불을 놓아 前2條에 記載한 以外의 建造物,汽車,電車,自 動車, 船舶, 航空機 또는 鑛坑 을 燒毀한 者는 2年 以上의 有 期懲役에 處한다.
 - ② 自己 所有에 屬하는 第1項 의 物件을 燒毀하여 公共의 危 險을 發生하게 한 者는 7年 以 下의 懲役 또는 1千萬원 以下 의 罰金에 處한다.
- 第167條(一般物件에의 放火) ① 제167조(일반물건 방화) ① 불을 불을 놓아 前3條에 記載한 以 外의 物件을 燒毀하여 公共의 危險을 發生하게 한 者는 1年 以上 10年 以下의 懲役에 處한 다.
 - ② 第1項의 物件이 自己의 所 有에 屬한 때에는 3年 以下의 懲役 또는 700萬원 以下의 罰 金에 處한다.

動車, 船舶, 航空機 또는 鑛坑 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지하채굴시설을 불태운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한다.

第166條(一般建造物等에의 放火) 제166조(일반건조물 등 방화) ① 불을 놓아 제164조와 제165조 에 기재한 외의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 는 지하채굴시설을 불태운 사 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한다.

> ② 자기 소유인 제1항의 물건 을 불태워 공공의 위험을 발생 하게 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 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으로 처벌하다.

> 놓아 제164조, 제165조, 제166 조에 기재한 외의 물건을 불태 워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한다.

> ② 제1항의 물건이 자기 소유 인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백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

第170條(失火) ① 過失로 因하여第164條 또는 第165條에 記載한 物件 또는 他人의 所有에屬하는 第166條에 記載한 物件을 燒毀한 者는 1千500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② 過失로 因하여 自己의 所有에 屬하는 第166條 또는 第167條에 記載한 物件을 燒毀하여 公共의 危險을 發生하게 한 者도 前項의 刑과 같다.

第184條(水利妨害) 堤防을 決潰하 거나 水門을 破壞하거나 其他 方法으로 水利를 妨害한 者는 5年 以下의 懲役 또는 700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第192條(飲用水의 使用妨害) ① 日常飲用에 供하는 淨水에 汚物을 混入하여 飲用하지 못하게 한 者는 1年 以下의 懲役 또는 500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② 前項의 飲用水에 毒物 其他 健康을 害할 物件을 混入한 者 는 10年 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제170조(실화) ① 과실로 제164조 또는 제165조에 기재한 물건 또는 타인 소유인 제166조에 기재한 물건을 불태운 사람은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

② 과실로 자기 소유인 제166 조의 물건 또는 제167조에 기 재한 물건을 불태워 공공의 위 험을 발생하게 한 사람도 제1 항의 형으로 처벌한다.

제184조(수리방해) 둑을 무너뜨리 거나 수문을 파괴하거나 그 밖 의 방법으로 수리(水利)를 방해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 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

제192조(먹는 물의 사용방해) ① 일상생활에서 먹는 물로 사용되는 물에 오물을 넣어 먹는 물로 쓰지 못하게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

② 제1항의 먹는 물에 독물이 나 그 밖에 건강을 해하는 물 건을 넣은 사람은 10년 이하의 第193條(水道飮用水의 使用妨害)

① 水道에 依하여 公衆의 飲用 에 供하는 淨水 또는 그 水源 에 汚物을 混入하여 飲用하지 못하게 한 者는 1年 以上 10年 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② 前項의 飲用水 또는 水源에 毒物 其他 健康을 害할 物件을 混入한 者는 2年 以上의 有期 懲役에 處한다.

第194條(飮用水混毒致死傷) 第192 | 제194조(먹는 물 혼독치사상) 제1 條第2項 또는 第193條第2項의 罪를 犯하여 사람을 傷害에 이 르게 한 때에는 無期 또는 3年 이상의 懲役에 處한다. 死亡에 이르게 한 때에는 無期 또는 5 年 이상의 懲役에 處한다.

第195條(水道不通) 公衆의 飲用水 를 供給하는 水道 其他 施設을 損壞 其他 方法으로 不通하게 한_者는_1年 以上 10年 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징역으로 처벌한다.

제193조(수돗물의 사용방해) ① 수도(水道)를 통해 공중이 먹는 물로 사용하는 물 또는 그 수 원(水原)에 오물을 넣어 먹지 못하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한다.

② 제1항의 먹는 물 또는 수원 에 독물 그 밖에 건강을 해하 는 물건을 넣은 사람은 2년 이 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한다.

92조제2항 또는 제193조제2항 의 죄를 지어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 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한다.

제195조(수도불통) 공중이 먹는 물을 공급하는 수도 그 밖의 시설을 손괴하거나 그 밖의 방 법으로 불통(不通)하게 한 사람 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으로 처벌한다.

第210條(偽造通貨取得後의 知情 | 제210조(위조통화 취득 후의 지

行使) 第207條記載의 通貨를 取得한 後 ユ 情을 알고 行使 한 者는 2年 以下의 懲役 또는 500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第252條(囑託, 承諾에 依한 殺人 | 제252조(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 等) ① 사람의 屬託 또는 承諾 을 받어 그를 殺害한 者는 1年 以上 10年 以下의 懲役에 處한 다.

② 사람을 敎唆 또는 幇助하여 自殺하게 한 者도 前項의 刑과 같다.

第262條(暴行致死傷) 前2條의 罪 를 犯하여 사람을 死傷에 이르 게 한 때에는 第257條 乃至 第 259條의 例에 依한다.

第268條(業務上過失·重過失 致死 傷)業務上 過失 또는 重大한 過失로 因하여 사람을 死傷에 이르게 한 者는 5年 以下의 禁 錮 또는 2千萬원 以下의 罰金 에 處한다.

第271條(遺棄, 尊屬遺棄) ① 老幼, 제271조(유기, 존속유기) ① 나이 疾病 其他 事情으로 因하여 扶 |

정행사) 제207조에 기재한 통 화를 취득한 후 그 사정을 알 고 행사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 금으로 처벌한다.

등) ① 사람의 촉탁이나 승낙 을 받아 그를 살해한 사람은 1 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한다.

② 사람을 교사하거나 방조하 여 자살하게 한 사람도 제1항 의 형으로 처벌한다.

제262조(폭행치사상) 제260조와 제261조의 죄를 지어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 우에는 제257조부터 제259조의 예에 따른다.

|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 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 에 이르게 한 사람은 5년 이하 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

가 많거나 어림, 질병 그 밖의

助를 要하는 者를 保護할 法律 上 또는 契約上義務 있는 者가 遺棄한 때에는 3年 以下의 懲 役 또는 500萬원 이하의 罰金 에 處한다.

- ② 自己 또는 配偶者의 直系算 屬에 對하여 第1項의 罪를 犯 한 때에는 10年 以下의 懲役 또는 1千500萬원 이하의 罰金 에 處한다.
- ③ 第1項의 罪를 犯하여 사람 의 生命에 對한 危險을 發生하 게 한 때에는 7年 以下의 懲役 에 處한다.
- ④ 第2項의 罪를 犯하여 사람 의 生命에 대하여 危險을 發生 한 때에는 2年 以上의 有期懲 役에 處한다.

第325條(占有强取, 準占有强取) | 제325조(점유강취, 준점유강취) ① 暴行 또는 脅迫으로 他人의 占有에 屬하는 自己의 物件을 强取む 者는 7年 以下의 懲役 또는 10年 以下의 資格停止에 處한다.

② 他人의 占有에 屬하는 自己

사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을 법률상 또는 계약상 보호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유기한 경 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한다.

-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 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지 은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으로 처벌한다.
- ③ 제1항의 죄를 지어 사람의 생명에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 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한다.
- ④ 제2항의 죄를 지어 사람의 생명에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 우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으 로 처벌한다.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점유에 속하는 자기의 물건을 강취(强取)한 사람은 7년 이하 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 격정지로 처벌한다.

② 타인의 점유에 속하는 자기

의 物件을 取去함에 當하여 그 奪還을 抗拒하거나 逮捕를 免 脫하거나 罪跡을 湮滅할 目的 으로 暴行 또는 脅迫을 加한 때에도 前項의 刑과 같다.

③ 前2項의 未遂犯은 處罰한다.

第330條(夜間住居侵入竊盜) 夜間 에 사람의 住居, 看守하는 邸 宅, 建造物이나 船舶 또는 占有 하는 房室에 侵入하여 他人의 財物을 竊取한 者는 10年 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第331條(特殊竊盜) ① 夜間에 門 戶 또는 墻壁 其他 建造物의 一部를 損壞하고 前條의 場所 에 侵入하여 他人의 財物을 竊 取む 者는 1年 以上 10年 以下 의 懲役에 處한다.

② 兇器를 携帯하거나 2人 以上이 合同하여 他人의 財物을竊取한 者도 前項의 刑과 같다.

第335條(準强盗) 竊盗가 財物의 奪還을 抗拒하거나 逮捕를 免

의 물건을 취거(取去)하는 과정에서 그 물건의 탈환에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하거나 범죄의 흔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때에도 제1항의 형으로 처벌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 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한다.

제331조(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한다.

②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 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사람도 제1항의 형으로 처벌한다.

제335조(준강도) 절도가 재물의 탈환에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

脱하거나 罪跡을 湮滅할 目的! 으로 暴行 또는 脅迫을 加한 때에는 前2條의 例에 依한다.

- 第348條(準詐欺) ① 未成年者의 | 제348조(준사기) ① 미성년자의 知慮淺薄 또는 사람의 心神障 碍를 利用하여 財物의 交付를 받거나 財産上의 利益을 取得 한 者는 10年 以下의 懲役 또 는 2千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 한다.
 - ② 前項의 方法으로 第三者로 하여금 財物의 交付를 받게 하 거나 財産上의 利益을 取得하 게 한 때에도 前項의 刑과 같 다.
- 第349條(不當利得) ① 사람의 窮 迫한 狀態를 利用하여 顯著하 게 不當한 利益을 取得한 者는 3年 以下의 懲役 또는 1千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 ② 前項의 方法으로 第三者로 하여금 不當한 利益을 取得하 게 한 때에도 前項의 刑과 같 다.

탈하거나 범죄의 흔적을 인멸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때에는 제333조, 제334조의 예 에 따른다.

사리분별력 부족 또는 사람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 득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게 하거 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도 제1항의 형으로 처벌 하다.

제349조(부당이득) ① 사람의 곤 궁하고 절박한 상태를 이용하 여 현저하게 부당한 이익을 취 득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 게 한 경우에도 제1항의 형으 로 처벌한다.

제357조(배임수증재) ①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u>자가</u> 그 임무 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 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때에는 5년 이하 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第1項의 財物 또는 利益을 供與한 者는 2年 以下의 懲役 또는 500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 ③ 범인 또는 정(情)을 아는 제 3자가 취득한 제1항의 재물은 몰수한다. 그 재물을 몰수하기 불가능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 한다.

제357조(배임수증재) ①
사람이
,
② 제1항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공여한 사람은 2년 이
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의 벌금으로 처벌한다.
③ <u>그 사정을</u>